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91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박형수 · 이성권 · 조배숙
강승규 · 안철수 · 박성민
안상훈 · 김종양 · 김소희
윤용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2025년 3월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연기 흡입, 화상, 대피 과정의 외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패혈증,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됨.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난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유가족이 그 부담을 사실상 떠안게 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사망 원인과 재난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규모재난 이후 일정 기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후유 피해와 사망 원인 판정, 피해 지원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피해상황”을 “재난사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피해상황”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재난으로 인한 상이나 질병의 후유증에 따른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제58조제2항에”를 “제58조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 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u>제58조제2항에</u> 따른 피 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 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 ⑤ (생략)	----- ----- ----- ----- ----- -----<u>제58조제3항에</u>-----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